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1149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11. 26

판결 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9. 체결한 매매계약을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9. 9.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출과 리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2019. 4. 16. D에게 2,6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대출이율 연 10.4%(연체이자율 연 13.4%)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D은 2019. 9. 20. 지급기일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는데,2020. 5. 26. 기준으로 원금 25,385,816원,이자 649,102원,지연배상금 1,543,528원 등 합계 27,578,446원(송무비 193,926원 제외)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D은 2017. 5. 31. 원고로부터 별도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2019. 9. 9. 배 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9. 9. 접수 E).

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 등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 다.

마. D은 2018. 8. 20. 암 진단을 받아 치료받던 중 2019. 10. 17. 사망하였고,배우자인 피고는 2019. 12. 3. D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은 2019. 12. 20.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2019느단1264 심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6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D에 대하여 2019. 4. 16. 대출을 통하여 대여금채권 을 보유하게 되었고,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 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차량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남아 있던 차량구입자금 대 출금 채무가 중고차 시세를 상회하여 부득이 배우자인 피고가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도 원고를 비롯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 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별다른 책임재산 없이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일반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만족을 곤란하게 한 이상 그 자체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 여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우선변제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이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이하로 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여전히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구성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임 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의 선의 를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D의 긴밀한 인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 로 는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원상회복 방법 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이전등 록(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9. 9. 접수 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태균

별지